

1995년도 조정관세 대상품목(화학부문)

● 1995년 12월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3920	플라스틱제의 필름	폴리아미드의 것으로서 두께가 12미크론이상 25미크론 이하의 것에 한한다.	15
			17
5111 5112	직물	1. 양모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의 것 2. 양모 또는 섬수모 함유량이 각각 전중량의 100분의85미만의 것 3. 섬수모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15 13 26
5208	면직물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으로서 평직물과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에 한한다	13
5515	합성스테이플 섬유 의 기타직물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 섬유의 것중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26 22
6601	산류	지팡이 검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20
6603	산류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7003	주입법 및 몰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	망입하지 아니한 쉬트유리중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도 포함한다)·불투명한 것·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흡수 또는 반사층을 갖는 것외의 것으로서 두께 2밀리미터초과 3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20
7004	인상법 또는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도 포함한다)·불투명한 것·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흡수 또는 반사층을 갖는 것외의 것으로서 두께 2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20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흡수 또는 반사층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중 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도 포함한다)·불투명한 것·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외의 것으로서 두께 2밀리미터초과 3밀리미터 이하의 것과 4밀리미터초과 8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20

● 1995년 12월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규 격 등	세율(%)	한계수량
0404	유장분말	다음각호의 1의 것에 한한다. 1. 사료용의 것 2. 조제분유용의 것	10 10	수입전량 4,127 M/T
0406 0714	치즈 매니옥 (카사바)	치즈원료용에 한한다 다음 각호의 1의 것에 한한다 1. 침상의 것으로서 주정용의 것 2. 펠리트상의 것으로서 사료용의 것 원유에 한한다	10 10	2,498 M/T 12만6000 M/T
2709	석유 및 역청유		2	수입전량
2710	경유 및 병키C유		3	수입전량
2711	프로판 및 부탄		2	수입전량
2825 2841 2905	오산화바나듐 팅스텐산염 메탄올 (메틸 알콜)	페로바나듐제조용에 한한다	3 3 2.5	1200 M/T 수입전량 수입전량
2915 3102	초산비닐 요소		4 4	수입전량 9만 M/T
3204	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조제품	다음각호의 1의 것에 한한다 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 2.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 3.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 4.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	6 6 6 6	350 M/T 75 M/T 50 M/T 100 M/T
5403	재생필라멘트사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2	7000 M/T
5504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속한다	4	수입전량
7601 7606	알루미늄괴 알루미늄판·쉬트 및 대(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알루미늄합금의 것중 AA3004, AA3104, AA3203(Zn1%이상), AA5042, AA5052, AA5082, AA5182의 것과 알루미늄을 Clad한 것에 한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의 것으로서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3 6	35만 M/T 4만 M/T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제품	본의 것에 한한다	2.5	수입전량
1519 2825 3808	농약원제 농약원제 "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각각 농약제조용의 주자재에 한한다	2 2 ~	1만5000 M/T

<화학저널 1995/7/3>